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704
------------	------

2020년 9월 8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정진철 의원 외 9명 발의

나. 제안일자 : 2020년 7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9월 8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이용요금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나. 주요골자

-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3. ~ 8. 2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가결<sup>1)</sup>**

○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의 전국단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세 버스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버스 도입에 따른 이용요금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장애인버스 이용요금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에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

1) 택시물류과-33787호(2020.8.24.)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내와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요금체제와 전국을 운행하는 ‘장애인버스’ 요금체제를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장애인버스’는 장애인콜택시와 다르게 장애인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장거리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이자 특별교통수단<sup>2)</sup>으로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sup>3)</sup>,

#### ※ 참고 : 장애인콜택시와 서울장애인버스 이용 비교

구 분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버스
운행지역		서울시, 서울시와 경계한 지역 및 인천국제공항	전국운행(단 서울시내 지역 제외)
최소인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을 포함한 10인 이상
운행대수		620대	2대
요금	기 본	1,500원(5km까지)	20만원(200km 까지)
	추 가	280원/km(5~10km 이내)	2만원/50km(200km 초과)
		70원/km(10km 초과)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장애인콜택시 추가사무 '장애인'전세버스' 추진 재요청 : 택시물류과-31319(2019.8.20.)

장애인버스(전세버스) 운영계획 통보 : 택시물류과-22607(2020.6.8.)

이용요금은 서울시 고시<sup>4)</sup>를 통해 200km까지 기본요금 20만원이며 200km 초과시 매 50km 마다 2만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sup>5)</sup>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sup>6)</sup>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버스' 요금체계는 조례 규정을 초과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일례로 '장애인버스'를 200km 이용시 요금은 20만원이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3,850원이고, '장애인버스'의 최소인원이 10명인 것을 고려할 때 운임은 38,500원이며, 조례의 3배를 반영하면 115,500원이므로 '장애인버스'의 요금은 현행 조례규정의 요금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음

---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6호(서울시보 제3589호)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기본운임 10km 이내 1,250원, 추가운임 10~50km 범위 매5km마다 100원, 50km초과 매8km마다 100원

※ 참고 : 도시철도와 서울장애인버스 요금

거리	도시철도			서울장애인 버스	
	요금 (a)	비 고	최소인원(10인) 및 조례한도 3배 반영 (a×10인×3대)	요금	비 고
10km	1,250원	기본운임	37,500원	20만원	기본운임
50km	2,050원	10~50km이내 5km당 100원 추가	61,500원	20만원	기본운임
100km	2,750원	50km 초과시 8km당 100원 추가	82,500원	20만원	기본운임
200km	3,850원		115,500원		
766.4km (서울부산 왕복거리)	11,050원		331,500원	44만원	200km 초과시 50km당 2만원 추가

- 다만, ‘장애인버스’는 장애인 콜택시 등 다른 특별교통수단과 다르게 좌석수<sup>7)</sup>가 많은 대형승합차이고, 고가의 차량가격<sup>8)</sup>과 연비<sup>9)</sup>, 장거리 운행시 1박2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 규정에 따른 요금체계로는 지속적인 운영과 향후 차량 증차 등 확대에 한계가 우려되는 바 과도한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요금 체계와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버스’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위반 소지 제거 및 운영 적자 최소화 등과 함께 장애인의 장거리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조례 개정 이후 ‘장애인버스’ 이용요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현행 조례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형태에 따라 이용요금을 명문화하는 절차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동일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장애인버스 좌석수 : 일반 29석(휠체어8, 일반21), 우등 23석(휠체어5, 일반18)

8)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출고가격(부가세제외) : 일반 239,695천원, 우등 236,430천원

9) 자동차등록증상 연비(경유) : 일반 5.0 km/L, 우등 5.1 km/L ※ 실 운행과 차이가 날 수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p> <p>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p> <p>② · ③ (생략)</p>	<p>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p> <p>① ----- ----- ----- ----. <u>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